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4회 주민총회 자료집

대흥 ~ 소흥 ~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4회 주민총회  
자료집

2024. 9. 28. (토) 11:00



◆ 2024년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목차

◆ 인사말

◆ 1.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 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 3.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 4.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

◆ 5.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 6.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사업선정 보고

◆ 7.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 8.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안내

## ◆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양승창입니다.

뒤돌아보면 즐거움과 보람된 추억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많았던 2024년이 저물어갑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게하는 2025년 乙巳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추마을 주민여러분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건강과 댁내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歲暮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적극 동참하시며 헌신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올해도 주어진 마을의제 실행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해 우리동의 실행사업중 가장 자랑할만한 사업의 하나는 『대조 아나바다 나눔장터』사업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진 아나바다 나눔 장터는 재활용품 나눔을 발판삼아서 주민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 나눔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시가 흐르는 문학콘서트, 스와니팝스 오케스트라 & 사랑의 자장면 나누기, 지역교회연합회와 합동으로 이웃돕기 나눔장터 운영 등 다양한 장터 운영을 통하여 총 5회에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동참한 주민들은 물론 여러 기관과 단체 및 지역 교회의 높은 호응을 얻게 되었으므로 내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더 활기찬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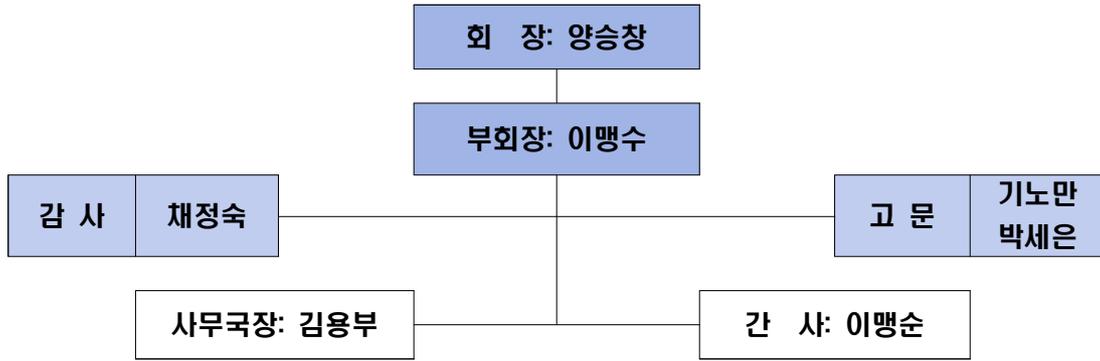
우리 대조동 주민자치회의 단합된 모습으로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생각되는 제4회 주민총회와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의 합동 개최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준비하였기에,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인 가을날 주말에 대조어린이공원에서 지역주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축제의 장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그 공로를 모두 자랑스러운 주민자치회 위원님께 돌리면서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품을 팔아서 대조동 주민 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 발굴한 2025년 마을의제 선정 사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제3기 대조동 주민자치회가 시작됩니다. 기존 위원과 신규 위원 등 50명이 새출발을 하게됨을 축하드립니다. 멋지고 훌륭한 대조동 주민자치회를 기대합니다. 대통! 소통! 구호처럼 서로 화해하고 양보하고 협치하여 크게 이루어내는 대조동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추마을 주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조동 주민자치회 회장 **양 승 창**

# 1.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건강·복지분과	
1	분과장: 양승창	1	분과장: 홍성국	1	분과장: 채종채
2	분과총무:	2	분과총무:	2	분과총무: 박순옥
3	강필숙	3	고윤철	3	나순학
4	김현주	4	김명선	4	박차열
5	박두수	5	김영적	5	윤진수
6	박중환	6	김후남	6	이봉호
7	이맹수	7	박순선	7	장수환
8	이미분	8	원영숙	8	장진숙
9	이성하	9	채정숙	9	정영찬
		10	홍성국	10	진성준
				11	최근숙
분과위원		분과위원		분과위원	
정성수				김일수	

## 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 ■ 대조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총원	성별		연령별					단체/개인 별	
	남	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단체	개인
35	18	17		1명	9명	18명	7명	13	22

### ■ 운영진 현황

회 장	부회장	감 사	사무국장	간 사	분과장(사업리더)
양승창	이맹수	채정숙	김용부	이맹순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 양승창 -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 홍성국 - 건강복지분과 : 채종채

### ■ 분과 현황

연 번	분과명	분과장	분과원수	주요사업·활동
1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양승창	12명 (위원10명,주민2명)	- 주민 민속놀이 한마당 - 대조 아나바다 나눔장터
2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한제경	11명 (위원11명)	- 사랑으로 지어진 집수리사업 - 대조 삼삼오오대학
3	건강복지분과	채종채	12명 (위원11명,주민1명)	- 만보 걷기 챌린지 - 두근두근~ 내감성에 물주기

### ■ 회의 운영

#### ■ 정기회의

- 일 시 : 매월 두번째 화요일 18:00
- 장 소 : 대조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 ▣ 운영진회의

- 일 시 : 매월 첫 번째주 화요일 11:00
- 장 소 : 동주민센터 2층 사무국
- 참석대상 :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



### ▣ 분과회의

- 일 시 :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 개최
- 장 소 : 2층 다목적실 및 사무국
- 참석대상 : 각 분과 위원 및 분과원,(회장,사무국장,간사 참관)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회의



●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회의



● 건강&복지분과 회의



● 성과공유회

- 일 시 : 2024년 12월 13일 (금) 구 합동 개최
- 장 소 : 구청 5층 대강당
- 진 행 : 공론장 운영



## ● 1동1대학 성과공유회

- 일 시 : 2024년 11월 6일 (수) 구 합동 개최
- 장 소 : 구청 5층 대강당
- 진 행 : 공론장 운영



## ▣ 기타 회의

### ● 사무국 회의

- 일 시 : 사업추진중 수시 개최
- 장 소 : 2층 다목적실 및 사무국
- 참석대상 :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주무관

### ● 민관협력회의

- 일 시 : 사업 진행상 논의 사항 발생시 실시
- 장 소 : 2층 다목적실 및 자치회 사무국
- 참석대상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동장, 행정팀장, 주무관



## 3.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4. 1.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 2024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 정기회의 - 임원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등
2024. 2.	분과구성	- 3개 분과 구성 및 분과원 모집 - 분과별 마을돌아보기

2024. 3.	2025년 마을의제 발굴 및 분과사업진행	- 마을 돌아보기 - 마을 의제발굴 - 건강복지분과 사과대추나무 거름주기 사업 진행
2024. 4.	2025년 마을의제 발굴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탄소중립 교육 - 역량강화 워크숍
2024. 5.	주민공론장 운영	- 주민공론장 운영 - 1동 1대학 관련 부서 및 대학 미팅
2024. 6.	부서 검토 분과사업진행	- 구 해당과에 의제 제출 - 사무국 재구성(회장,국장,간사)
2024. 7.	1동 1대학 미팅 물놀이장 개장	- 건강복지분과 등 분과별 사업 진행 - 대조어린이공원 조명시설개선 완료 - 1동 1대학 미팅(동국대 대학원)
2024. 8.	2025년 마을의제 주민총회 준비위구성	- 주민총회 준비위 활동 - 3개 거점 사전투표소 분과별 운영준비
2024. 9.	2025년 마을의제 선정 주민총회	- 제4회 주민총회 - 은평구 주민총회 - 대추마을 한마음축제 개최
2024.10.	분과 사업 진행	- 어르신 뷰티 나들이 섬김잔치 - 동 지역사업 마무리 활동
2024.11.	분과 사업 진행	- 동 지역사업 최종 마무리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2024.12.	성과공유회 송년회	- 구 합동 성과공유회 - 제2기 주민자치회 종료

## 4.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

### ■ 감사 개요

- 근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제3항
  - 감사일시 : 2024.01.15.(월) 10시
  - 감사장소 :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사무국
  - 감사 : 회계 및 사업감사 채정숙

## ■ 감사 내용

-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상태
-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별 회계예산
- 사업감사                      ● 회계감사

#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b>감사종류</b>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b>감사대상</b>	대조동 주민자치회
<b>감사내용</b>	1. 사업감사 1) 자치회 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여부 2) 자치회의 안정과 분과모임의 활성화 여부 3) 주민요구에 맞는 의제사업 발굴 및 사업진행 여부 ※ 회의록 및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 회의록 점검 2. 회계감사 1) 2023년 상반기 사업 예산집행 결과 2) 집행기준 준수와 증빙 자료 ※ 사업별 지출결의서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b>주민자치회 공통서류검</b>	1.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정기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 3. 운영진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 4. 분과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 5. 민관협력 안건지 및 회의록 6. 지출결의서 7. 총계정원장 8. 비품대장 9.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10. 사무국장, 감사 활동 일지 11. 직인사용 일지 12. 주민총회 관련 문서 13. 수발신 문서 14. 업무인수인계서 15. 직인 보관관리 16. 법령 문서철
<b>조치사항</b>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 양호 (해당 감사 내용 첨삭 등 감사 의견 제시)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 양호 (일부 미첨부 서류 보충 바람)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 양호 (일부 미첨부 서류에 대한 사유 및 미비서류 첨부, 보충 바람)
<b>종합의견</b>	<b>[예시]</b> - 운영진회의 7회와 정기회의 및 11회 사업 모임이 진행되었고, 정기회의 참석율은 95%이고, 2023년 주민총회에 상정된 실행의제가 99.9%이상의 집행율을 보였음. - 주민참여예산 1억원 중 000사업 (천원), 0000사업(000천원) 등으로 집행됨을 확인했음. 각 사업마다 서류가 미비하지 않게 마무리 되도록 점검바람.

붙임 :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 내용 1부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제출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회계 감사 (채정숙)

은평구청장 귀중

## 5. 2024년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7건)

연번	분야	사업의제	사업비 (천원)	예산 총계	실행 분과		
1	일반 (5천) 동단위	사랑으로 지어진 집: 집수리 사업	11,000	50, 000	자치회관 홍보교육 분과		
		목적 :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 발굴 및 주거생활 개선 내용 : 집수리 봉사자를 교육 • 양성하여 취약계층 중 반지하 주택 등 도움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진행 기간 : 2024. 7. ~ 11.(하반기)					
2	문제 해결 사업 (프로 그램	대조동 주민 민속놀이 한마당	7,000		50, 000	환경개선 자원순환 분과	
		목적 : “대조동 민속놀이의 날” 을 개최 내용 : “대조동 민속놀이의 날” 을 개최하여 세대 간 문화를 나누고 함께 즐기면서 주민 만남의장, 마련 일시 : 2024. 9. 28.(주민총회 및 동축체와 병행)					
3	40% 미만 선정/ 시설	만보 걷기 챌린지(함께 걷자 대조야)	2,000			50, 000	건강복지 분과
		목적 :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걷기운동 프로그램 내용 : 건강 걷기 전문 강사에게 바른 걷기 자세를 배우고 은평구 지역 명소를 함께 걸으며 쓰레기 줍기 등 (Plogging)줍기 활동 등도 진행 기간 : 2024. 9. ~ 10.(하반기)					
4	3천 만원)	대조어린이공원 조명시설 개선	30,000				50, 000
		목적 : 조명 확보로 야간에도 안전한 대조어린이공원 내용 : 대조 어린이공원 야간 조명 확보로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공원 미관 개선 등으로 주민 편의 제공 기간 : 2024. 5. 17. ~ 5. 24. 시행 완료 개선사항 : 6개 조명시설 교체 및 조성					
5	공동 (2천)	대조 아나바다 나눔장터	11,000	20, 000			
		목적 : 주민 나눔 장터 활성화 확산 내용 : 주민들 주도의 나눔장터 활성화로 자원 순환에 기여 하고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 기간 : 2024. 5.~10. <5.11/6.15 (상반기), 7.6/ 9.28/ 10월중 (하반기)>					
6	환경	두근두근 ~ 내 감성에 물 주기	9,000		20, 000		
		목적 : 반려 식물 키우기 및 웃음치료 등으로 감성 자극 내용 : 재활용 키트로 반려식물을 키우고 웃음 치료 및 강의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등 긍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 기간 : 2024. 6. ~ 10.(하반기 반려식물 전시회 개최)					
7	특화 (3천)	대조 삼삼오오대학	30,000			30, 000	
		목적: 1동 1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고품질의 대조동 평생 교육시스템 마련, 지역과 대학의 상생 마련 내용 : 1동 1대학 협약을 통해 대학의 전문성을 지역 평생 학습에 접목 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 6.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사업선정 보고

분야	연번	사업명	투표수	예산액 (천원)
사전투표 및 온라인 및 현장투표: 630명, 무효: 8명				70,000

프로그램	1	건강계단	445	4,300
	2	대추차 향기 가득한 정다운 대조동	423	5,000
	3	대조동에 찾아온 소중한 천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	410	5,300
	4	우리 같이 요리 조리	314	5,400
환경	1	우리집 탄소중립 친환경제품 만들기	587	8,700
	2	지구야 힘내 내가 더 많이 노력해 볼게	521	12,300
특화	1	대조동 다독다독 문학마을	541	8,100
시설	1	장미공원 시설 개선	629	20,000

# { 2024년 주민총회 결과 공고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4-07호

## 2024년 제4회 대조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5년 실행되는 대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결과를 공고합니다.

###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운영방식 : 대면 속의공론장 방식 등
- 투표방법 : 사전투표(거점), 온라인투표 및 주민총회 현장 투표 등
- 투표기간 1) 온라인 투표 : 2024.09.02.(월) ~ 2024.09.13.(금)  
2) 사전 투표 : 2024.09.02.(월) ~ 2023.09.13.(금)  
3) 총회 현장 투표 : 2024.09.28.(토) 10~11시
- 대 상 : 대조동 주민 (투표권: 13세 이상 주민, 생활 주민)
- 참여인원 : 총 724명(온라인투표, 사전투표 및 현장 투표 포함)

### 2. 주민총회 투표결과

구분	승인 사업		온라인 투표	사전·	무	최종	순위
				현장 투표			
2025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프로그램 2천만원	1. 건강 계단	1	445	8	445	1위
		2. 대주차 향기 가득한 정다운 대조동		422		423	2위
		3. 대조동에 찾아온 소중한 전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		410		410	3위
		4. 우리 같이 요리 조리		313		314	4위
	환경 및 동특성화 3천만원	1. 우리집 탄소중립, 친환경제품 만들기	1	586	587	1위	
		2. 지구야 힘내 내가 더 많이 노력해 볼게	521	521	2위		
		3. 대조동 다독다독 문학마을	1	541	542	3위	
	시설 2천만원	1. 대조장미공원 시설 개선	1	629	8	630	찬성

### 3. 주민총회 개최 모습



이상과 같이 대조동 제4회 주민총회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제시는 대조동 주민자치회(☎02-305-02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 7.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 ■ 구석~ 구석~ 마을돌아보기 [건강복지분과]



### ■ 구석~ 구석~ 마을돌아보기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 ■ 구석~ 구석~ 마을돌아보기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 ■ 대조어린이공원 조명개선사업 모니터링 및 공사



■ 주민자치 운영세칙 개정위원회 회의



■ 주민공론장 개최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



■ 전통민화 수업 [대조 1동 1대학]



■ 건강한 더위나기 {사랑의 추어탕} 나눔행사



■ [아나바다 나눔장터 1] {시 콘서트}와 함께하는 ~~!!



■ [아나바다 나눔장터 2] {효사랑 짜장나눔} 음악회



■ [아나바다 나눔장터 3] 대조동교회연합회 합동 이웃돕기 모금



■ [아나바다 나눔장터 4] 스와니팍스 오케스트라와 협연~!!



■ [아나바다 나눔장터 5]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와 함께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 주민총회 사전 현장투표 진행 (3개소)



■ 주민총회 당일 현장투표 진행



■ 2024년 대추마을 한마음축제



■ 어르신 이미용봉사 & 돋보기 안경 후원행사



■ 칼갈이 & 장난감 고쳐주기



■ 사랑으로 지어진 집 [집수리사업]



■ 만보 걷기 챌린지, 함께 걸자 대조야~!



■ 두근두근 내 감성에 물주기



■ 대조 삼삼오오대학 {대추마을 홈 카페}



■ 202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 대조동 1동 1대학 성과공유회(구 합동)



■ 2024 은평구 합동 성과공유회



■ 2024 주민자치회 송년회 {구청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세칙

2021.1.22.~2.2		내규 수립 의견수렴
2021.02.03		내규 수립 워크숍
2021.02.08	1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1차 회의
2021.02.16	2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21.03.09	제정	1차 정기회
2021.05.04	개정	3차 정기회
2022.03.15	개정	2022.3. 정기회의(위원 회비)
2022.04.12	전면 개정	2022.4. 정기회의
2023.05.09	개정	2023.5. 정기회의
2024.05.14	개정	2024.5. 정기회의



#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표준 운영세칙(202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대조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대조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실행, 성과공유의 과정까지 동 주민자치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사무국장·간사·분과위원장(또는 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대조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대조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조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대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종교적·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행정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시에 한한다.)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하되,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 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임원과 위원인 사무국장, 간사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분과 활동에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고성·욕설 사용 등으로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8. 특정 위원을 사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라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되,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회의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 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감사와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2. 분과별 위원장, 분과총무 각 1명

제11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 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 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감사는 세칙 제19조, 제20조를 따른다.

제12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부회장·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

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 및 수시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사업추진 내역
2. 주민자치회 수입, 예산 지출 내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동내역 전반

③ 제2항 2호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의 대상은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과 수익금·찬조금 집행 등에 한하며,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교부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시감사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세칙 제23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1회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회의 또는 정기회의에 연 3회 불참할 경우(단,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범하였을 때
4.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 또는 주민자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5. 주민자치회 운영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 또는 임무 태만 등의 민원 발생으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임)** ① 임원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등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단, 후보 등록 공고에 3회 이상 지원자가 없을 시에, 회장의 경우는 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부회장의 경우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② 궐위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궐위로 인해 후임자로 선출된 경우도 이와 같다.
- ④ 회장과 부회장 모두 궐위시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업무 대행 수행자를 결정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 ⑥ 사무국장·간사·자원봉사자 등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구 또는 해당 동에서 공개 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 3. 주민과 소통하며 대조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은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회장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대조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 처리하며, 업무 상황을 종합하여 상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시에는 공개모집의 선정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출하고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 제20조(간사)

-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은평구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한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록 작성, 예산회계 출납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간사는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 정기·임시회의의 주요 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시에 자치회장은 간사를 새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남은 활동기간 동안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분과원(이하 “주민자치분과원”이라 한다.)과 일반주민 분과원(이하 “일반주민분과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분과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④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과 사무국장·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⑤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한다.
- ⑥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⑦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일반분과원은 분과장과 분과총무 역할은 할 수 없다.
- ⑧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의 각종 활동 및 분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 사업계획수립 등 분과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⑨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가입시 가입신청서를, 탈퇴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회의, 사업 활동 등에 연 5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⑩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⑪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대조동 전체 주민자치사업을 함께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⑫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실행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⑬ “주민자치 분과원” 과 “일반주민분과원” 은 분과회의 및 실행사업 운영 등 분과활동과 관련하여 분과에 해를 끼치거나 분과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분과원 정족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분과에서 제외 한다. 단, “일반주민분과원” 은 해당 분과에서 퇴출시 해당분과원으로서의 자격과 타분과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운영회의
3. 민관협력회의
4. 분과회의
5. 주민총회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또는 간사)은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확정 등 관련된 사항
4. 주민자치회 사업·결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

5.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해임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9.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총무로 구성한다.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② 민관협력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동장, 팀장, 동담당자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7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 ① 주민자치회는 의제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론장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와 함께 당해 년의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및 평가, 차년도 사업안내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2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3세 이상의 주민(대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1%(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④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홍보, 설명회, 사전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⑦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⑨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⑩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⑪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

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예산
3.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4.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② 주민자치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료는 주민자치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3조(회계 및 지출)** ① 제32조(재정)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산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제32조(재정)에 규정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사무국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의 인계)** ① 임원, 자치위원 및 사무국장, 간사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추진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③ 인수인계 시점은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직인)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승인을 받은 날 (2024.5.14.)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 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 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애경사에는 근조기, 축하기 및 현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부모,자녀)에 한함

3. 현금성 경비 (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 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경미한 지출 및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결제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 본인 상해 3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0,000원 지급한다. 단, 2년 임기 중 1회에 한함.

⑦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 후원, 자치위원회에 대한 답례품 등)

- ⑧ 회비는 매월 보고하며 매년 12월 감사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 ⑨ 위원의 혜택은 연회비 및 회비 완료 회원에 한함. 단,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 회장 양승창**

**편집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김용부**

**대조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맹순**